

IFLA-ICA 개인정보보호법과 아카이빙에 관한 성명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법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법의 침해적 성질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널리 환영받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기록 보존과 기관소장자료(예: 기록 자료, 데이터 등)의 무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법을 준수하려는 보존기록관리자들의 갈망을 생각하면 법의 명료성의 결여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직업 규약의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기록관의 수집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성명은 도서관, 기록관, 그리고 관련 협회의 정보 보호법 지지의 핵심 원칙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록물의 특징

세계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기록물을 자료의 장기적 가치를 위해 보존하는 인간 활동의 기록 부산물로 정의한다. 개인과 단체가 사업 과정에서 창작한 동시대의 기록물이고 그렇기에 과거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창 역할을 한다 [\[1\]](#).

이 자료들은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바탕을 제공하고 연구, 투명성, 기록 보존 의무, 또는 역사적 기록의 완전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이 자료들은 더욱 강력한 사회와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된다.

이들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 기록물을 선택, 보존하고, 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기록물 소장기관들은 사회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물과 개인정보

기록관은 필연적으로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식별정보는 지인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성격, 상황 그리고 활동과 관련된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접근 체계도 정보 관리와 보존 기능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기록 관리와 아카이브 프로그램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한 정보 처리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에 따르면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제 29 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들 사이 균형을 달성하려면 윤리원칙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 도서관과 기록관 근무자들은 책임, 수집, 관리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접근 허용 방식에 관한 의사 결정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개인 정보의 양이 상당한 경우 보존기록관리자는 정보의 민감성이 만료되거나 개인이 사망하여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점까지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보존과 기록물 접근성 제공에 관한 현존하는 관행

IFLA 윤리강령(IFLA's Code of Ethics) [2], 역사 자료에 담긴 개인식별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IFLA 성명(its Statement on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Historical Records) [3], 그리고 ICA 윤리강령 (ICA's Code of Ethics) [4] 모두 표준을 제시하고 그 표준은 국내외에서 지속되는 관련 전문위원회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다.

이들은 자동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전문적 이해와 판단에 따라 해석한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포함)의 정신과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그러한 규제는 해당 정보가 신원 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정보가 불공정하거나 무관하거나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에 적용된다(예 : 잊혀질 권리).

이 문서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접근 제한을 허용하지만 기록물에 담긴 정보의 영구 파기 또는 삭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한 법률은 기록관리자들이 그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정보 접근에 대해 결정을 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제안

새 규칙들이 접근, 수정 그리고 보존기록 소장기관들이 보유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을 요구할 개인의 권리를 허용하는 한편, 이는 오늘날과 미래의 연구자들과 다른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록에 접근하고 권한 있는 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부와 기타 의사 결정자들에게 다음을 제안한다.

-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인에게 더욱 강력한 권리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법을 환영한다.
- 그런데도 그러한 규칙들은 도서관과 기록관 같은 전문기관들이 개인식별정보를 담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 기록물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규칙들은 자동적으로 접근을 향상해야 하나 그 규칙들은 필요한 때 예외 규정 적용을 허용하여 개인 사생활, 기밀성, 문화적 민감 요소를 보호하거나 정당한 안보 관련 우려를 충족시켜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은 기록유산 또는 문화유산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의 파기 또는 삭제를 허용 또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자료가 보존용으로 선정되고 자료를 지속적 문화적 가치를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 도서관, 기록관 그리고 여타 기록물 보관 기관이 개인식별정보를 담은 자료에 대한 접근 관리 및 결정과 관련하여 엄격하고 효과적인 윤리 강령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록물을 보관하는 도서관과 기록관이 선의인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제한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Website: [What are Archives](#)

[2] IFLA (2012), [Code of Ethics](#)

[3] IFLA (2008), [Statement on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Historical Records](#)

[4]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6), [Code of Ethics](#)